

동묘앞역 청년안심주택
청계 로벤하임 2차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0-1)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3. 08. 25.

이승은 외 3인

- 차 례 -

1. 개 요	03
2. 공급일정	05
3. 공급현황	06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09
5. 청약 신청 방법	14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17
7. 계약안내	18
8. 유의사항	19

1 개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40-1일원 (1호선 동묘앞역 3번, 6호선 동묘앞역 5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139세대 중 민간임대 61세대 (일반공급 61세대)
- 단지명 : 청계로벤하임
- 시행사(임대사업자) : 이승은 외 3인
- 시공사 : 우암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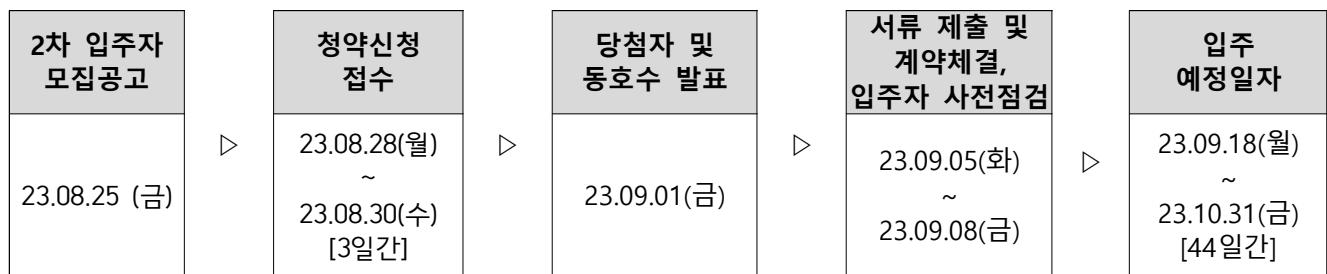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준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이승은 외 3인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 등(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주) 주택임대 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이승은 외 3인은 입주개시일 전 보증상품 가입 접수 예정입니다. (단, 상품 가입기관 사정에 따라 가입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3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고, 임대보증금보다 선수위인 제한물권(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일부보증에 동의하는 경우는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모집공고문 상 임대 보증금 조건(30%, 40%, 50%) 이외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 보증금 조건(70%, 80%, 100%)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상기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활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홈페이지 : www.lovenheim.co.kr
 - 이메일 : lovenheim@naver.com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의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동묘앞역 청년안심주택 청계로벤하임 입주지원센터(02-6273-0707)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1차 청약 계약자분들은 2차 청약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예정일자 : 2023.09.18.(월) ~ 2023.10.31.(화)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www.lovenheim.c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3. 08. 28. ~ 2023. 08. 30. 까지(24시간 가능)

※ 기타 추가 서류 및 자동차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의 경우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체결은 2023.09.05.(화) ~ 2023.09.08.(금) 기간동안 진행됩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원본서류를 제출해주세요 하며, 기한 내 서류 미 제출 또는 계약 미 체결 시 청약 신청이 취소되고 당첨이 무효처리됩니다.

※ 입주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40-1, 13층 (1호선 동묘앞역 3번, 6호선 동묘앞역 5번 출구)

※ 청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예비입주자(공급 세대수의 500%)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09.18.(월)~2023.10.31.(금)이며,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재공지 됩니다.

※ 사용승인(준공)은 2023.09.15.(금) 예정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준공필증 또는 사용승인서 등을 추후 발급해 드리오니 계약 및 대출 상담 시 참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02-6273-0707,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40-1, 13층 (1호선 동묘앞역 3번, 6호선 동묘앞역 5번 출구)
- 홈페이지 : www.lovenheim.co.kr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청계로벤하임 입주지원센터(02-6273-0707)'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당사 홈페이지(www.lovenheim.co.kr)에서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및 구글 검색창에 '청계로벤하임' 검색]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40-1 (1호선 동묘앞역 3번, 6호선 동묘앞역 5번 출구)
-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13층 1개동 총 139세대 중 민간임대 61세대(일반공급 61세대) 공급
- 공급대상**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세대당 계약면적(m ²)				발코니 확장면적 (m ²)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면적 포함)	합계	
청년(1인) 또는 신혼부부	29.80m ² (29)	8		8	29.80	17.36	7.07	54.23	8.40
	30.96m ² (30)	17		17	30.96	18.42	7.40	56.78	3.56
	33.71m ² (33)	8		8	33.71	19.20	7.92	60.83	7.33
	34.79m ² (34)	10		10	34.79	20.51	8.29	63.59	8.98
	35.30m ² (35)	9		9	35.30	20.75	8.40	64.45	8.33
	39.30m ² (39A)	9		9	39.30	24.29	9.53	73.12	8.81
합계		61		61					

■ 모든 타입 청년(1인)과 신혼부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주택타입별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청약 시 타입별로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시, 주거전용(타입)별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형(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주택형(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으로,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이 포함되며, 상기 계약면적에는 위에 설명 드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의 세부 산정 기준」 등과 기타 따라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 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면적산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상기 타입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일부변경(±3%내외)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청약신청 및 계약은 불가하며, [임차인 모집공고] 미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2023.09.18.(월)~2023.10.31.(금) 이나,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당사 현장 사정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재공지 됩니다.
- 상기 공급호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임대 주택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일반공급 – 총 61세대 [청년(1인) 또는 신혼부부 61세대]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청년(1인) 또는 신혼부부	29.80m ² (29)	8	7,080	74	9,440	63	11,800	53
	30.96m ² (30)	17	7,080	74	9,440	63	11,800	53
	33.71m ² (33)	8	7,560	76	10,090	65	12,610	54
	34.79m ² (34)	10	7,680	77	10,240	66	12,800	55
	35.30m ² (35)	9	7,680	77	10,240	66	12,800	55
	39.30m ² (39A)	9	8,510	84	11,350	72	14,190	60
합 계		61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www.lovenheim.co.kr)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 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상기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 사업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실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시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월임대료 후불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에 따라 일할 산정되어 당월 또는 익월 월임대료 납부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후 30일 이내 반환됩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번호)를 불출합니다.

- 잔금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 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실사용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공통사항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인 자'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단,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의 경우 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준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하며,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인 경우만 단지에 등록하여 정해진 요금으로 소유·운행 가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등록요청세대의 경우 자동차 가액 증빙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민간임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구 분	1순위	2순위(25% 이하)		3순위	그 외
대 상	입주자 필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나눔카	거주자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협의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차량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기준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아래 차종별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차종		운행방식	등록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경우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생 업 용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기계식)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는 주차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입증의 책임 :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차량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 통지의 의무 :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차종변경(처분 포함)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2.7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능가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나.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등록 증빙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차종	증빙서류		부수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각 1부	
유자녀용 자동차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 임산부일 경우 임신진단서 1통 추가		
생업용	자동차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자동차 가액 증명서류	
	이륜차 (125cc이하)	- 재직증명서, 근무지 사업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화물/도구 등을 실은 해당차량 사진, 이륜차 가액 증명서류	

※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이륜차 가액 기준 : 해당 연도 이륜차 시가표준액

■ 유의사항

- 본 주택에 청약 시 타입별로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인 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신청 자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릅니다. 또한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으로 접수하고, 소득·지역요건 없으며 경쟁 시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시 일반공급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청약 신청한 주택형(타입)별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 예비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26일부터 2004년 08월 25일 사이에 출생자)
- ② 미혼
- ③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년 08월 26일부터 2004년 08월 25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③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④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 없음
-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2016.08.26~2023.08.25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

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3) 입주공급 선정기준 및 방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일반공급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08.25.(금)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발급처	유의사항
1.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 면허증 中 택1)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2.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정부24(인터넷)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추가 (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5. 공급신청서		
6. 서약서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행정복지센터, 구청, 시청	- 직접 방문하여 발급
9.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확인 자료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자동차 소유·운행자인 경우
10.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홈페이지 : www.lovenheim.co.kr 인터넷 청약 신청
- 당첨 후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입주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 및 계약 체결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에 자동차 등록 요청 세대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형(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생업 용 이륜차)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증빙서류 일체를 당첨자 서류제출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청약 신청 방법

- 신청접수 일정 : 2023.08.28.(월) ~ 2023.08.30.(수)
- 청약방법 : www.lovenheim.co.kr 인터넷 청약 신청
- 입주지원센터(02-6273-0707)를 통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 안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청약(본인 명의 휴대폰 필수)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접수 대행을 위한 방문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또는 계약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등으로 인해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이 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 반드시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은 당첨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 및 계약일정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심사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임대사업자에게

계약안내	<p>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당첨 이후 연락이 안 되거나,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또는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었으나 소명치 못하실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다음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p> <p>※ 당첨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 및 계약 권리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p> <p>※ 계약 시에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형별로 청약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나 잔여 공실에 대해서는 등, 층, 호 구분 없이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 일정 및 안내사항은 개별 고지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지정일자 : 2023.09.18.(월) ~ 2023.10.31.(금) 예정 ○ 계약금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604-249813, 예금주 : 교보자산신탁(주) ○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 및 비밀번호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 당첨 후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일까지 미납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 1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 절차에 따라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후 30일 이내 반환됩니다. ○ 월 임대료는 실입주일과 열쇠 및 비밀번호 불출일 중 빠른 날부터 발생되며, 매월 말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입주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잔금 납부 및 열쇠 불출 완료시점)부터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 월 임대료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추가 서류제출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입실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팬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청소는 사업자(임대사업자)가 실시하며 퇴실 청소비는 퇴거 시 청소용역비용이 임차인에게 실비 부과됩니다. ○ 임차인 만족도 조사, 거주자 실태 조사, 임차인 무단전대 조사 등 임차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수집 정보: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사항 등 ○ 임대차 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반사항 발생 시 입주자는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관리방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울시 방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의 범위 이내로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갱신 계약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즉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 시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기존 임차인이 재계약을 체결(갱신계약)하는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위 자격요건의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

○ 당첨자 발표

1) 발표일 : 2023.09.01.(금) 16:00 예정

- 당첨확인 : 홈페이지 www.lovenheim.co.kr
- 당첨자는 청약자가 청약 신청 시 직접 입력한 자격요건에 의해 선정하며,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 실제 자격요건이 입력한 자격요건과 다르거나 본인의 입력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청약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순번은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하며 당첨자 발표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오니, 직접 조회하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에 예비입주자(공급유형별 모집 세대수의 500% 비율로 추첨) 및 예비순번 또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핸드폰 번호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하며, 개인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통지는 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사업자(임대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추첨

- 당첨자 :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
- 예비당첨자 :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추첨 및 배정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층간 소음이나 저층/고층 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능합니다.)

계약안내

■ 방문 계약 일시

구분	계약일자	계약시간
당첨자 계약일정	2023.09.05(화) ~ 2023.09.08(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방문 계약 장소 및 유의사항

- 계약장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40-1 (청계 로벤하임 13층 커뮤니티실) 입주지원센터
- 당첨자는 아래의 준비물과 서류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문의 연락처: 02-6273-0707)
- 추가로, 계약 시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대면 및 실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당첨자들에 한해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오니, 당첨자들은 가능한 예약하신 시간에 최대한 맞춰 방문하여 계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유의사항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분	계좌정보
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604-249813
예금주	교보자산신탁(주)

- 상기 임대보증금 납부 관련 금융기관 및 납부 계좌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당사 홈페이지 및 당첨자에게 개별 고지 예정입니다.
- 입금 시 반드시 '호수+계약자 이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 103 홍길동)

■ 공통 준비물 및 제출서류

준비물	유의사항
① 계약금 납부 영수증(입금 또는 이체 확인증)	현장 계좌이체 가능, 현금 수납은 불가
② 본인 명의 휴대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체결용
③ 계약자 본인 도장	본인 서명 가능
④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⑤ 자격확인 제출서류 원본 일체	발급기관 : 정부24(인터넷),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 추가 서류는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대리 계약 시 추가 준비물 :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지정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당첨 및 계약 권한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체결 시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꼭 편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공간인 주차장면을 외부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에서 관리비용 상각 후 각 세대 당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계획대수	계획비율(%)
계	46	100%
필수 주차공간	소계	27
	장애인	2
	비주거(상가 등)	6
	유자녀	15
	생업용	4
활용가능 주차공간	소계	15
	거주자 우선주차	5
	나눔카	5
	외부개방	5
여유 주차 공간	4	9%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향후 주차장 운영 상황과 배정원칙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정 될 예정입니다.
-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나눔카 이용확대 및 주차면수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차량 유형별 주차료

구분	정기권료(월)	비고
필수 주차공간	장애인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의 50% 적용
	유자녀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의 100% 적용
	생업용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의 100% 적용
	비주거(상가 등)	외부정기차량 주차금액의 50% 적용
활용 주차공간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	자치구 거주자우선 주차금액
	나눔카	나눔카 업체 기준 가격 적용
	외부개방	인근 지역(자치구) 월주차 가격 적용
여유주차공간	120,000원	외부 정기차량정기권 가격 적용

- ※ 우리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이며 향후 주차요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 수용가능 차종

구분		SEDAN(EQUUS급 이하)	SUV / RV
차 량 제 원	전장	5,160 mm	5,160 mm
	전폭	2,150 mm	2,150 mm
	전고	1,550 mm	1,900 mm
	중량	2,200kg	2,200kg
제외차종		개조차량, 리무진류, 스타렉스류, 수용가능 초과차량	

-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이 아닌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의 경우 외부정기차량 요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 우리 단지는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 우리 단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2.7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커뮤니티시설 운영 계획

시설명	전용면적	위치	설치목적	내용
라운지 북카페	102.96㎡	지상 13층	생활편의 공간	서가에 300권 이상의 양질의 도서 비치 오픈 라운지와 그룹 모임실로 구성 간단하게 커피와 다과 공급 가능하도록 주방 시설 설치

- ※ 해당시설 이용요금 중 일정 부분은 부대수입으로, 각 세대 당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 해당시설 변경 필요 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향후 변경하여 결정하고, 설치 후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대시설 환경

○ 주택환경

세대 내부 환경			
구분	주요시설	비고	
현관	수납장(신발장)	설치	
침실 거실 주방	가구	불박이장(옷장), 싱크대	설치
	가전	에어컨	청년형 1대, 신혼형2대(삼성)
		냉장고	273L (LG DIOS)
		세탁기	9kg (LG TROMM)
		쿡탑	인덕션 2구 (하츠)
욕실, 화장실	수납장(욕실장)	설치	

단지 내부 환경		
주차장	총46대(자주식6대, 기계실40대)	장애인주차: 2대(포함) 나눔카주차: 5대(포함)
재활용분리수거장		지상 1층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커뮤니티시설	북카페라운지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 지상 2층
무인택배보관함		지상 1층
통합실외기실		각 층에 배치
엘리베이터	주거용 2대 / 비주거용 1대	-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관리비 예상 금액

○ 대표 공급유형 일반관리비 추정액

(단위 : 원/월, VAT별도, m²)

공급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대별 공용관리비 추정액
청년	20.32m ² (20A)	75,980
청년(1인) 또는 신혼부부	30.96m ² (30)	114,647

※ 공용관리비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 가능하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

(단위 : 원/월, 일부 항목 VAT별도)

단지 내부 환경		
일반관리비	6,664,841	관리사무소 인건비, 제사무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청소비	2,960,722	
경비비	6,925,222	
소독비	300,000	
승강기유지비	400,000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발생 시 반영
소계	17,250,785	
관리비 차감액	-	주차장 수입 발생 시 차감
관리비 부과액	17,250,785	

※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경우 '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는 공공임대16호, 공공지원민간임대 123호가 혼합된 단지입니다.

■ 공통사항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공부정리 절차 및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부지경계 및 대지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경라인(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각종 인쇄물, CG 이미지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서비스 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는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을 정산 후 2주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 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써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만 입주가 가능하며,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입주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 및 단지 내 외부공간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문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 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전화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 내용은 참고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 임차인 모집을 위한 샘플 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따릅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환경

- 사업대상지는 지하철1,6호선 동묘앞역 2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주동배치 및 건물 입면의 장식, 주변 단지의 신축,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상1층~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지상2층에는 비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의 통행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상13층 일부시설에 입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능 및 성능개선에 의한 내부 디자인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 저층부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실은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상1층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됩니다.
- 건물내 설치된 옥상층 정원에 환기를 위한 벤츄레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층에 정화조 배기팬이 설치되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배기용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동묘구제시장 내에 위치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출입구가 면한 종로58길은 주말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의 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넓고 쾌적한 공간구성을 위해 보일러실을 개별이 아닌 층별로 통합하여 캐스케이드시스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캐스케이드시스템 특성 상 공용가스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단위세대 빌트인 세탁기의 경우 전 호실에 제공되며 쿡탑 하부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기타 자세한 위치 등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 및 가구 등이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거 시에는 입주 시 제공된 품목은 원상회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확인된 후 반환하셔야 하며, 미 반환시 신품비용과 함께 설치비용이 추가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바닥 마감재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석재,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에는 에어컨, 쿡탑, 불박이장 등이 설치되며, 입주 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경우 동일한 타입 간 호수별 평면 레이아웃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배관 및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빨래 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입주 전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세부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용량,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가전 및 가구는 대체 및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부를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 개조로 인한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귀책 사유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이용은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하며, 입주 전 공간 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별 운영계획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관리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의 경우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단지 내 반려동물을 양육이 금지되고, 출입이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양육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성범죄자는 적발 즉시 당첨 취소, 퇴거 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13인승 2대와 상가전용 13인승 1대 (승용 · 장애인 겸용) 계획되어 있습니다.
- 동묘앞역 청년안심주택 청계로변하임은 원활한 주택관리를 위하여 SKT, KT, LG U+ 등 인터넷 통신사를 별도 지정하지 않고 인터넷 통신망을 병행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E/V)실, 설비배관실(PD), 배연설비시설, 급기실(A/D), 전기통신실(EPS/TPS) 등은 인허가 당시 기준 공용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운영상 관리비의 부과, 또는 분양전환 시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이 인접한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해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자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시공시 표기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계획된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은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호수 번호, 외부 색채와 계획은 관계 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 (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부여되는 단지명, 지번, 도로명주소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사용검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창호의 크기 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
- 주차대수는 총 46대 중 장애인주차장 2대를 포함한 자주식 총 6대를 제외한 40대가 기계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주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사(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3층에는 북카페라운지가 계획되며,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 지상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공시설에는 소음, 진동 및 다중의 집객으로 인한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비상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매연 등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구조 활동을 위하여 옥탑 공간 일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됩니다.
-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경보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경보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기계식 주차, 비상발전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 또는 향후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1층~지상2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가 옥상층까지 운행되지 않으며, 최상층 세대원을 위하여 출입시간이 제한됩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 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사업자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 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대차계약 체결 시 동묘앞역 청계 로렌하임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입주 후에 무단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실 관련

-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계약 체결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1인가구)의 당첨자는 당첨자 본인이 입주 시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첨자 본인 이외 동거인의 거주는 불가하고, 세대원에 대한 추가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형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추가세대원 등록 및 동거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동거인 등록은 제한됩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입주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주택(1인가구)이나 신혼부부형 주택에서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의 거주가 확인되거나 추가세대원 등록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고,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셔야 하며,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퇴거 시 및 퇴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묘앞역 청년안심주택 위치

